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특경법상 기업인 취업제한 옳은가?

일시 : 2019.5.22(수) 오후2시

장소 : 제일빌딩 3층(종각역 8번출구)

주최 : 기업법연구소,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자유경제포럼, 지배구조포럼

후원 : 바른사회TV

본 토론회는 바른사회TV(유튜브방송)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순 서

■ 사 회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주제발표

- 박 인 환 (변호사 / 前 건국대 교수)
- 김 정 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 前 연세대 특임교수)

■ 토 론

- 최 준 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 질의·응답

■ 폐 회

목 차

■ 주제발표

‘특경법’상 기업인 취업제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9
- 박 인 환 (변호사 / 前 건국대 교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21
- 김 정 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 前 연세대 특임교수)

■ 토 론

- 최 준 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9

-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34

■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 박 인 환　전 건국대 교수

■ 김 정 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발제 ①]

‘특경법’상 기업인 취업제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박 인 환
변호사 / 前 건국대 교수

1. 특경법 시행령의 개정과 기업인 취업제한의 확대

1) 지난 4. 30. 법무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의 취업제한이 확대된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림

2) 특경법상 기업인(경제인)의 취업제한 관련 내용

0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3,000만원 이상 수재 또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판결 확정 시 해당 기업인은 특경법에 정한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됨.(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취업승인권 있음)

0 취업금지기간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0 취업금지기간에 법무부 장관의 취업승인 없이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취업한 자와 해임요구에 불응한 기업체의 장은 형사처벌을 받게 됨.(법 제14조 제4항, 제5항, 제6항 참조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벌)

3)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기업인 취업제한의 확대)

0 특경법 제14조 제1항, 경제사범 기업인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 시행령(제10조 제2항)은 주로 유죄판결 받은 자의 공범이나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였음.

0 개정령안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함.(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0 개정령안은 2019. 5. 7.경 공포를 거쳐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1. 8.경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특경법상 경제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됨.

* 법무부에서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함.

* 아울러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2009. 5.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폐지(특경법 개정)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힘.

* 또한 법무부는 2018. 9.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의 재판결과를 파악하여 취업제한 등의 사실을 통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하여 취업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임.(시행령 제12조 참조)

* 또한 특경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충실하게 추진할 예정임.

4)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이유

0 현행 특가법에서는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횡령·배임죄나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 중한 경제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0 이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중한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람이 다시 그 기업체에 취업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0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2. 기업인 취업제한 확대의 문제점

1) 정치적 의도 : 형사사법상 포퓰리즘

0 법무부가 경제범죄 관련 기업인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한 것은, 최근 일부 기업인들이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도 뚜렷한 반성 없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특히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취업제한 대상에 새로 추가한 것은 사실상 재벌기업 총수를 겨냥한 맞춤형 법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0 이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의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현행법상 유죄판결 받은 자의 공범이 있는 회사는 취업이 안 되는데, 유죄판결 받은 자신이 몸담은 기업에는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손질해 달라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었다는 점을 고백하고 있음.

2) 기업인의 직업의 자유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0 특경법상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 제한 기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지만,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범죄 관련 기업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0 즉 비록 전과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 기업인의 '사경제 영역'에 속하는 기업

체에 대한 취업제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기본권 침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 참조)

3) 과잉입법으로 인한 이중처벌의 가능성

0 경제사범으로 재판을 받은 기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제한이라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과잉입법이자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음.(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죗값을 치른 상황에서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음)

0 특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특경법상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및 그 자가 대표자·임원인 기업체에 대하여 취업제한기간 동안 관허업의 허가, 인가 등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경제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부과 이외에 추가적인 행정적 제재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

0 더구나 기업인의 취업제한은 그 규제의 내용상, 실질적으로 징역형에 병과하는 형벌(명예형)의 일종인 자격정지에 해당하므로 징역형 등 다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과 판결의 선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참조)

4) 죄형법정주의의 위배 가능성

0 특경법상 비록 경제범죄자인 기업인의 취업제한 기업체에 관하여 위임규정(제14조)이 있으나, 헌법과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규정만으로 총수 등 기업인의 취업 제한을 확대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으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현재 비슷한 내용으로 채이배, 금태섭 의원

의 특경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0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범죄로 징역형 등의 형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하여 추가로 기업체의 임원 등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인 자격정지에 해당하므로 취업제한을 법률이 아니라 하위법인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타당하지 않음.

5) 기업경영활동의 위축

0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인 범죄로서 횡령죄나 배임죄를 들 수 있을 것인데, 특히 배임죄는 처벌기준(구성요건) 자체가 불명확하고 법원의 판결도 때에 따라 엇갈리는 경향이 있음.

0 이에 따라 취업제한 확대 조치가 어려운 기업경영 전반에 몰고 올 파장이 우려되는 바, 그 동안 사법당국은 기업인이 신사업을 모험적으로 추진하거나 대형 인수합병(M&A)에 나섰다가 실패하면 배임죄 등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이처럼 결과에 따라 경영판단에 형벌을 부과하고 또한 기업경영에서 몰아낸다면 이로 인한 창업주나 전문경영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함.

*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특경법위반 범죄로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연간 평균 1,200명 정도에 이름

6)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0 비록 과오가 있는 기업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인의 경영복귀 여부는 시행령에 의한 사법당국의 타율적 규제가 아니라 시장과 주주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 원칙임.

0 과거 시행령이, 취업제한 기업체에 대하여, 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나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로 규정한 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인이 그 범행(범죄행위)의 보상이나 대가 또는 이익분배로서 사후에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사후에라도 범행의 보상, 대가나 범행에 따른 이익분배를 박탈한다는 의미가 있었음.

0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이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로 규정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 기업체'는 설사 경제범죄 기업인이 그곳에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대가나 보상, 이익분배로서 취업한 것이 아니고 피해 기업체(다수 주주 또는 책임경영자)가 그 피해를 감수하기로 하고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사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 창업주 또는 대주주, 1인 회사의 지배주주가 특경법 경제사범인 경우 형법의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

7) 형사법 체계의 부정합성

0 특경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특경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인에 대한 취업제한이라는 제재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함.(법무부 장관의 취업승인권)

* 특경법 시행령 제13조(법무부 장관의 취업승인권)
특경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을 이를 심사하여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0 해당 경제사범인 기업인을 재판한 법원의 판사가 아닌, 행정부의 장관이 해당 경제사범의 기업체 임직원의 취업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8) 형법상 '자격정지' 형의 병과 활용

0 위에서 본 것처럼 기업인의 취업제한은 실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인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바, 자격정지는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임.

0 특히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징역형 외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을 병과할 수 있으므로 특경법상 따로 기업인에 대한 기업체 임직원 취업제한의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의 효과와 내용상 동일한 형법상 자

격정지 형의 병과 선고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형법 제358조)

* 자격정지는 당연히 또는 특별한 판결로써 ① 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임.

* 자격정지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위 ①~③의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며(형법 제43조 제2항)
  둘째, 특별한 판결로써 자격정지를 선고한 때에는 위 ①~④의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정지할 수 있음.(형법 제44조 1항)

* 이러한 자격정지 형의 선고는, 징역형 등 다른 형과의 선택형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형과 함께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으며,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게 됨.(형법 제44조 2항)

3. 특경법상 배임죄의 경우

0 배임죄에는 일반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죄(형법 356조), 회사 임직원의 특별배임죄(상법 622조) 등이 있으며,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됨.(특경법 제3조 제1항)

0 배임죄의 배임행위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위배한 것임(배신성)

* 횡령죄와 구분 : 특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전체로서의 재산)
* 모험거래와 배임행위
  주식이나 외환거래 등과 같이 장래의 이익과 손해가 불분명한 투기적 성질의 모험거래의 경우에는 내부 기준과 거래 관행에 따라 판단함.

0 배임죄와 불법이득의 의사
  사무를 잘못 처리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경우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0 배임죄에 관하여 후퇴한 (보수적) 판결

- 배임죄의 경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의 필요성 여부(고의의 범위) 우리 대법원은, 배임죄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종전 판결을 폐기함(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 우리 대법원은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성만 있어도 해당한다고 판결(위험범) 하였으나 이는 부당함.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결과범임)

0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독일이나 호주 등은 기업가의 경영 판단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음

*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05년 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경영난을 겪자 수천억 원대의 지급보증과 자금 제공 등 부당 지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됨
또한 경영자가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때 실패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특히 한화 김 회장의 경우 성공한 구조조정도 처벌받은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경영상 판단이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업 총수의 경영권 박탈까지 실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기업, 반재벌' 정서를 가진 좌파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등 소위 '권력자에게 찍힌' 기업 총수를 쫓아낼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특히 배임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에 밉보인 기업 길들이기에 활용될 가능성)

0 2014년 헌법재판소는, 성질상 민사적 문제인 배임행위에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며,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한 '손해'나 '이득액'의 의미가 모호하고, 아울러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같은 다른 구성요소 없이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고

있는 것 자체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주장에 대하여, 형법과 특경법이 규정하고 있는 배임죄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4. 대응방안

정권이 기업을 망하게 하고 경제를 망치게 할 의도가 아니라면 또는 기업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도록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차제에 과잉입법에 의한 기업경영 관련 규제 개혁과제 -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1) 배임죄 규정의 정비

0 차제에 성질상 민사사안에 해당하는 배임죄의 규정을 폐지하거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기업가에게 자신이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면 배임죄 불성립)

0 배임죄의 경우 비슷한 사안을 두고도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도 많았으며,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재계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 해달라고 요구함.
(2015. 4. 재계가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경영실패가 아닌 사익취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경영자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회사에 최대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가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경영자의 의무위반을 부정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임.

2) 자격정지 형의 병과 제도 활용

0 현행 형법에 의하면, 특별한 판결(자격정지 형의 선고)로써 기업체(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1년 이상 15년 이하) 정지시킬 수 있음.(형법 제43조 제1항)

0 이러한 자격정지 형의 선고는 다른 형과의 선택형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형과 함께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고 현행 형법상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자격정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며,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게 됨.(형법 제44조 2항)

0 따라서 위헌시비가 있는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취업제한 규정을 특가법 및 그 시행령에 둘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격정지 형의 병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3) 취업제한 규정의 폐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사기업의 자율권 및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권에 의한 '재벌 길들이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특경법상 경제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폭넓게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경법 제14조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 재벌 길들이기의 가능성]

1) 뇌물공여 등 박영수 특검 기소 사건 : 현재 대법원 재판계류 중

0 2018. 2.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전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1심은 징역 5년 선고)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뤄진 수동적 뇌물공여"이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규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양측에 비슷한 책임을 지운 1심 판단을 바꾸어 이 부회장에게는 감형을 해 준 것임.

0 원래 2017. 1. 박영수 특검이 1차로 이 부회장에 대하여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당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음.

0 그 후 2017. 2.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영장을 발부받음.

0 결국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에 의하여 총 5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임.

0 이에 대하여 1심은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중 정유라 제공용 마필 구입비·용역대금, 영재센터 후원금만을 뇌물로 판단해 총 298억여 원 중 89억여 원을 유죄로 판단하고, 차량 구매대금이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음.
이와 함께 횡령액도 승마지원 과정에서 64억여 원, 영재센터 지원 과정에서 16억여 원 등 총 80억여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음
또한 재산국외도피 금액도 총 78억 원 중 허위 지급신청서를 이용해 코어스포츠 계좌로 보낸 37억여 원은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으로 보아 37억여 원만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 예금거래신고서로 송금한 마필 대금 42억여 원은 인정하지 않았음.
이를 토대로 원심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음.

0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 원 만을 뇌물액으로 인정하고, 최순실과 최 씨의 딸 정유라가 마필이나 차량을 빌려 쓰는 과정에서 본 이익은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뇌물 총액에 포함하지 않았음
또한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용역대금에 한해 유죄로 인정하여 횡령액이 50억 원 이하로 내려가고,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임.(이 부회장이 2심 선고 직전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도 고려되었음)

2) 삼성바이오 사건 : 현재 수사 중

0 최근까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급진전을 보였는데,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직원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도 비슷한 혐의로 구속됨.

0 이어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임원 두 명에게도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가 삼성그룹 내 상층부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임.

0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은 이 부회장 관련 위 대법원 판결도 삼성바이오 수사가 끝날 때 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고, 또한 문 대통령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은 대법원 재판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음.

0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기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의심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바이오 수사는 윗선을 향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더 강하게 굳힌 상황이라고 함.

[발제 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김 정 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 전 연세대 특임교수

1. 개정된 특경법 시행령 및 특경법 법률 개정안의 내용

이 정부 들어서 대기업 총수들의 힘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법적 조치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안도 그런 움직임 중의 하나다. 배임, 횡령 등 특경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대기업 총수가 자기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이사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채이배의원의 특경법 개정안, 금태섭 의원의 같은 법률 개정안도 구체적 표현과 범위는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특경법은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수재 등 범죄의 경우 금액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더하여 법 제14조는 이 법으로 유죄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취업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한다는 것이 기존 시행령의 내용이다. 개정령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해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켰다.[1] 채이배와 금태섭 의원의 법률개정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2]

개정된 시행령안은 2019. 5. 7.경 공포를 거쳐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 11. 8.경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경제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된다.

2. 웅진그룹 케이스로 본 개정안의 구체적 영향

1) 법무부, [보도자료]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의 취업제한이 확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2019.4.30.
2) 전상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9.03.

웅진그룹은 극동건설 등을 인수한 후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2012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다. 웅진그룹 회장 윤석금은 그 과정에서 사재출연과 계열사 간의 지원을 통해서 그룹 자금난을 해결하려 했지만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부실계열사 지원은 불법행위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2013년 8월 검찰은 윤석금 회장과 임원들을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혐의와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2012년 7~8월에 1천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 CP를 발행한 혐의
-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회사 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지원해 회사 측에 592억5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횡령 혐의
-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회사 자금을 끌어다 웅진캐피탈에 지원해 968억 원의 손실을 입힌 배임 횡령 혐의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심: CP 발행 혐의는 무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 원(562억 + 968억) 가운데 1520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 윤석금에게 징역 4년 선고.
- 2심: 2015년 12월 열린 2심에서 윤석금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은 공모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유는 우량계열사 동원에 앞서 윤회장이 사재 1800여억원을 부실회사에 먼저 출연해 본인이 큰 손실을 감수했고, 계열사 지원 동기도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계열사의 경영 정상화였다는 점 등이 인정되었기 때문. 윤 회장 등은 2심 판결에 승복,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

웅진은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 2012년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2016년 7월에는 계획보다 6년 앞당겨 빚을 완전 변제했다.

유죄 판결로 윤회장은 2020년 말까지 회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고 출국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유죄판결을 받은 윤회장과 임원들이 행위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의 등

3)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naver&num=31296
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7121080041

기이사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주 단순히 생각해 본다면 기존의 특경법 시행령에 의해 윤석금 회장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은 지원의 대상이 된 웅진플레이도시와 웅진캐피탈이다. 또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들이 행위 당시 임원으로 있었던 기업도 취업 제한 대상이 된다.[5)]

개정된 시행령이 발효되면 지원의 주체가 되었던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 및 렉스필드칸트리클럽에 대해서도 등기이사로 취임할 수 없게 된다.

특경법에 의한 취업제한 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3. 특경법에 의한 취업제한의 불합리성

3.1. 취업제한과 형벌의 비례성 파괴

형벌은 죄의 경중과 비례해야 한다. 즉 죄가 가벼우면 형벌도 가벼워야 하고 죄가 무거우면 형벌도 무거워야 한다. 이 비례관계가 깨지면 우선 공평이라는 가치가 침해된다. 또한 범죄행위에도 영향을 준다. 비례성을 무시하고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죄를 무조건 중벌로 다스린다면 가벼운 범죄로 끝날 것도 중죄로 번질 가능성이 생긴다. 벌은 죄의 경중에 비례해야 한다.

특경법상 취업제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 벌은 재판부가 죄의 경중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 특경법 제14조에 의한 취업제한은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실질적 형벌이다. 더욱이 취업제한의 형벌적 효과는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즉 취업제한 되는 회사의 규모가 크다면 죄가 가벼운 사람에게도 형벌효과는 무거울 것이고 취업제한 되는 회사의 규모가 작다면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형벌효과는 가벼울 것이다. 따라서 특경법상 취업제한은 형벌의 비례성을 파괴하며 불합리하다.

3.2. 취업제한은 회사에 해롭다

취업제한은 제한이 되는 회사에 해로울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재범률 문제다. 만약 배임 횡령 등으로 특경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 취업제한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제한시킨다면 해당 회사로서는 좋은 경영자원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범죄 유형별로 재범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봤다. 다음의 표는 2017년의 범죄 유형별 재범률이다. 마약은 50.5%, 도로교통법 45.4% 등으로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 범죄 중에서 기업 경영자에게 주로 발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5)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2019년 3월에 공시된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그룹 지주회사인 ㈜웅진의 등기이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것이 배임죄다. 배임죄의 재범률은 7%로서 매우 낮다. 즉 기업경영자가 배임 등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재범을 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런 사람을 경영에 참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또는 참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회사에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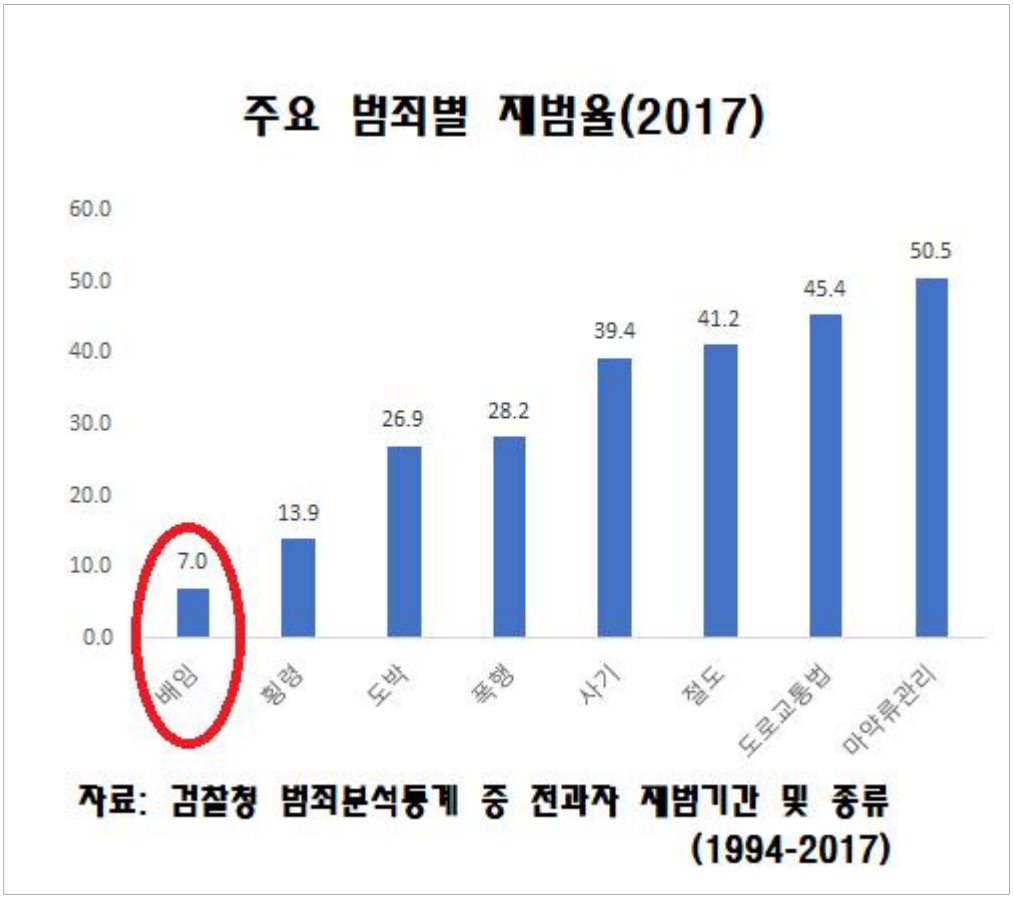

둘째, 잠재적 범죄 예방 효과다. 즉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자들이 배임이나 횡령을 저지를 확률을 낮출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방법인가의 문제다. 취업제한이 경영자 중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확률을 낮출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형벌효과의 비례성이 깨지기 때문에 중죄를 유도할 가능성 또한 있다. 무엇보다 범죄예방효과를 징역 벌금액수 등 형량 자체로 결정할 일이지 비례성도 없는 취업제한을 수단으로 얻을 일은 아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효과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경영행위만 제약하는 것이어서 회사에 해로울 가능성이 크다.

셋째, 웅진그룹 케이스처럼 불합리하게 범죄가 된 경우 경영자의 취업제한이 회사에 결정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 윤석금 회장과 임원들이 계열사 지원행위를 한 것은 위기에 처한 웅진그룹 전체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여유가 있는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을 겪는 계열사를 지원하게 해서 자금난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지원을 하는 계열사로 보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룹 전체로 보면 대다수 주주에게 이로운 행위일 수 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1년 4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고 6년만에 채무를 조기상환했으며 2019년 현재 과거의 사세를 되찾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경영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마도 결정권을 가진 윤석금 회장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조건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룹 전체가 더 잘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3.3. 배임죄, 횡령죄 판단의 모호성과 취업제한의 해악

웅진그룹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한 그룹을 살려내는 과정에서 배임죄가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금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계열사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를 지원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일 때가 많을텐데 이것이 배임과 횡령일 가능성이 높다. 지원 주체 계열사의 입장에서는 제3자인 자금난에 처한 계열사에게 이익을 줬으니 배임죄가 된다. 그리고 경영자가 지원 대상이 된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원 주체 계열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 된다.

만약 기업들이 자금난에 처했을 때 계열사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과연 해당 그룹 기업의 주주들과 채권자들과 경제 전체에 더 좋은 것일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은 2017년 SPP조선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렸다.[6] 즉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이라면 계열사간 지원을 했더라도 배임이나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당한 지원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계열회사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지원 대상 회사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했는지 △지원한 계열회사로부터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등이 제시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확립된 판례라고 볼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즉 웅진그룹 사건 같은 것이 다시 발생한다고 할 때 과연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마저 배임죄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결정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취업제한은 회사의 회생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즉 특경법 위반으로 죄과를 치른 경영자에게 취업제한까지 가하는 것은 해당 기업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조치라는 말이다.

4. 결론: 취업 제한 조항은 폐지가 답이다.

6)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17/11/762446/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특경법에 의한 취업제한 조치 확대의 불합리함을 살펴보았다. 취업제한은 형벌의 비례성을 파괴한다. 기업 경영자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배임죄의 경우 재범률이 낮기 때문에 취업제한은 불필요하게 회사의 정상적 경영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해롭기도 하다. 웅진그룹 사례처럼 정당한 자구활동이 배임 횡령 등으로 처벌받는 상황에서 덧붙여지는 취업제한은 회사의 자구활동을 더욱 제약한다. 이번 개정된 특경법 시행령 조항은 해로운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든다. 개정된 특경법 시행령 조항은 되돌리는 것이 좋다. 더 나아가 특경법 제14조에 의한 취업제한 조항 자체도 폐지하는 것이 해당 기업과 채권자와 경제에 이롭다.

■ 정책토론회

토 론

■ 최 준 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05.07. 공포)의 문제점

최 준 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 경 과

(1) 국회 채이배 의원이

2018.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14조 제1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와 관련하여,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7] 이미 규정된 공범 등과 관련된 기업체 뿐만이 아니라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하 ‘특정경제범죄자’)가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등의 기업체에 대하여도 시행령에서 취업제한 기업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발의

(2) 국회 금태섭 의원이

2018.9. “취업제한기관에 특정경제범죄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출자금이 5% 이상인 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취업제한의 예외

---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1.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응하여 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체
2.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3.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4. 법 제3조·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발의

(3) 2018. 10. 국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 “재벌총수 일가가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신의 기업체에 계속 취업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으냐”고 따졌던 데 대해 법무부는 시정하겠다고 답변

(4) 2019.4.30. 법무부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019.5.7. 공포, 2019.11.8. 시행예정

2. 특경법 제14조(취업제한) 관련 연도별 유죄판결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 위반조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평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1207	1,094	996	1,053	1,403	672	1,169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제2항	0	4	0	0	3	6	2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제4항	28	20	8	10	30	4	18
특정경제범죄법 제8조	6	5	6	4	13	3	7
합계	1,241	1,123	1,010	1,067	1,449	685	1,196

※자료: 법무부

3. 입법례

유일한 입법례로서 독일은 형법(Strafgesetzbuch) 제70조에 따른 법원의 “직업금지명령”(Anordnung des Berufsverbots)을 통하여, 경제사범이 일정 기간 동안 그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독일 형법은 우리나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경제사범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음. 또한 독일 형법은 ‘취업금지’가 아닌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직업 자체를 가지는 것을 금지함

제70조(직업금지명령)
(1)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을 악용하여 또는 그와 관련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거나 또는 책임무능력이 증명되거나 배제될 수 없어 유죄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법원은 행위자와 행위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를 계속 수행하면서 그와 같은 유형의 현저한 위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의 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 법정 상한이 행위자로부터 예상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구히 직업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직업금지가 유효한 동안, 행위자는 타인을 위하여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를 수행하거나 그의 지시를 받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업금지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효력을 갖는다.

4. 문제점

(1) 경영권 박탈

경영자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복귀할 수 없도록 국가가 막는 것은 경영권 박탈이 됨. 특경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현행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취업이 제한되는 6개 기업체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호의 문언상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자신이 재직했던 기업체가 아니라 '다른 기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직했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렇지 않고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굳이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배임 등의 행위로 '이익을 본 기업체' 외에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음. 그리고 이익을 본 다른 기업체 취업을 막는 이유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배임을 저지른 것이 탄로나 처벌되더라도 그 범죄자가 이익을 안겨준 그 타 회사에 취업이 보장된다면 배임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은 타 회사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 것임. 그런데 형을 선고받은 자가 기업인인 경우 자신이 재직하던 기업체에 경영자로서 복귀하는 것을 막는 건 취업제한이 아니라 경영권 박탈이 되므로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가 됨. 경영금지는 아직 특경법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형사제재의 부과로서 그 법적 의미는 (대표)이사 자격정지형에 처하는 것이 됨. 자격정지형은 자격상실형과 함께 명예형임. 명예형도 형벌의 일종이므로 어떤 범죄에 대해 명예형을 병과(竝科)할 것인가는 반드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돼야 함. 그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임

(2)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였지만, 특정경제범죄자가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기업체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여 취업제한기업체를 확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하여 특정경제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함으로써 헌법 위반. 유사 사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도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법무부장관이 취업제한이라는 형사제재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4) 민간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승인 없이 취업한 자, 해임요구 불응 기업체의 장(長)은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되고, 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 설치하여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재도입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함. 이는 민간 영역에 검찰국이 크게 관여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국가가 사기업체의 직접적인 인사권한이 없고,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영역인 민간 기업체에 대하여도 법률상 당연퇴직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 설치하여 운용한다면, 비록 '검찰국 경제사범 전담팀'의 활동범위가 법률에 엄격하게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인들로부터는 기업을 범죄집단시하여 감시한다는 인상을 받게 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기업인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을 기하여 법령을 개정하고 팀을 운영하여야 할 것임

(5) 이의신청제도 필요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 대한 해임요구 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③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임직원의 경우

총수가 아닌 기업 임직원의 경우, 회사가 범죄전력자를 채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국가가 이런 영역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음. 실제로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임직원이라면 회사가 알아서 퇴사시킬 것임. 범죄전력자라 해서 국가가 종전의 직장에서조차도 쫓아내라고 강요한다면 비정(非情)한 사회가 될 것임.

특경법상 기업인 취업제한 옳은가?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 개정안의 핵심은 **"배임, 횡령 등 특경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대기업 총수가 자기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이사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임.

o 지금까지는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취업 제한했지만, 이제 지원주체 기업에도 취업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임.

- 이러한 개정추진에 대한 기본 정서는;

1) 대기업 총수는 돈만 아는 탐욕적인 악인
2) 배임, 횡령은 정의롭지 않은 경영행위
3) 경제악인은 법으로 규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탐욕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에 폐가 된다.

- 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점들:

1) 대기업 총수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산이다.

- 대기업은 아무나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을 이루었다는 것은 기업경영 재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임. 총수의 경영지식은 해당 기업 뿐 아니라, 국가에 도움을 주게 됨. 시장경제와 국가발전은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임.

o 이런 총수 지식의 무형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는 발전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무지의 국가가 됨.

2) 배임법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이 아니고, 경제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며, 특히 이를 공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 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이며, 시장경제 발전에 장애요인이 됨.

- 배임행위은 핵심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배임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알수 없고, 사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됨. 그래서 기업인은 교도소 담장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언제든지 여러 가지 비경영 논리로 감옥에 갈수 있는 정부우위의 규제임. 그래서 기업총수는 정권과 수평적인 당당한 존재가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이런 행위에 대해 기업간의 문제로, 사법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공법으로 경제행위로 인해 형사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음. 과거 정부개입이 보편화되었던 시대엔 공법으로 규제했지만, 국제간 경제경쟁이 치열한 시대엔 경제행위에 대한 정부개입을 '과잉 범죄화'로 보고, 억제하도록 제안하는 추세임.

3) 누가 기업을 위해 몸을 던지겠는가?

- 배임 등의 행위가 주관적 판단에 많이 결정될 경우에는 앞으로 본인 기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까지 기업을 살리는 행위는 누가 할까? 이는 개인 재산권을 스스로 지키려는 기업경영 행위로 인해 죄인이 되고, 정부로 부터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됨. 결국 스스로 재산권을 지키는 노력보다, 정권의 눈치와 규제조항만을 피해가려는 눈치보는 경영인만을 양성할 것임. 국제 경쟁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국내 정치와 규제조항만 챙기는 기업인이 대기업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을까?

o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점점 줄어들고, 국제간 경쟁력도 줄어듬으로써, 국가경제는 퇴보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임.

<MEMO>

<MEMO>

기업법연구소

자유경제포럼

지배구조포럼